#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65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2.

발 의 자:성일종·구자근·김태흠

이명수 · 전주혜 · 윤재옥

강민국 · 하태경 · 김정재

이 영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

현재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하여는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32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, 생계가 곤란한 5·18민주유공자(유족)에 대하여는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금전적 지원이 없어,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에 대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므로, 5·18민주유공자(유족)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1인가구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.

# 주요내용

5·18민주유공자와 유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0조의2 신

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0조의2(생활조정수당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- 1. 5 · 18민주유공자
- 2. 5·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 순위자 1명
-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경우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보상금"은 "생활조정수당"으로 본다.
- ③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·조사·질문 등 수급권 확인·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과 금융정보제공 및 생활조정수당 신청의촉진 등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④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및 권리의 보호와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2 및 제18조

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⑤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, 그 지급액, 지급방법,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보조금 및 제55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"을 "보조금, 제55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관한 보조금 및 제60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60조의2(생활조정수당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 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1. 5・18민주유공자 2. 5・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경우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.이 경우 "보상금"은 "생활조정수당"으로 본다. ③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・조사・질문 등 수급권 확인・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과 금융정보제공 및 생활조정수당 신청의 촉진 등에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
	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

제64조(학습보조비 등의 환수)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(제16조 및제16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),제30조에따른 직업재활훈련비·직업능력개발훈련비,제31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·지원비,제34조에따른 의료지원비,제48조에따른 보조금 및제55조의2에

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
규정을 준용한다.
④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및 권
리의 보호와 지급정지 등에 관
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
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
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
의 규정을 준용한다.
⑤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
하며, 그 지급액, 지급방법, 그
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
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범위
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64조(학습보조비 등의 환수) ①

-----보조금, 제55조의2에

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따른 요양지원에 관한 보조금 을 환수하여야 한다.

및 제60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